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233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 박덕흠·강대식·윤한홍

김정재 · 김예지 · 김선교

이종배 • 고동진 • 조지연

서천호 · 강승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승차대는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있음.

이에 택시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구역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택시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구역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6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	
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	
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택시 승객을 승차・하차시키
	거나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구역임을 표시하는 기
	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
	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
	<u>인 구역</u>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